

전력기술인 교육훈련 실시 안내

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력기술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전력기술인께서는 신청하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
1. 교육훈련 일정

- 본 교육훈련은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및 학·경력자 등 모든 전력기술인은 반드시 5년에 1회 이상의 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교육과정	분야	횟수	교육일정	교육방식
특급기술자	안전관리	1	6. 8 ~ 6. 9	합 속
	설 계	1	6. 15 ~ 6. 16	
	시 공	1	6. 22 ~ 6. 23	
중·고급 기술자	안전관리	1	6. 10 ~ 6. 12	합 속
		2	10. 14 ~ 10. 16	비합속
	설 계	1	6. 17 ~ 6. 19	합 속
		2	10. 21 ~ 10. 23	비합속
	시 공	1	6. 24 ~ 6. 26	합 속
		2	10. 26 ~ 10. 28	비합속
초 급 기술자	안전관리	1	6. 30 ~ 7. 3	합 속
		2	11. 2 ~ 11. 5	비합속
	설 계	1	7. 7 ~ 7. 10	합 속
		2	11. 9 ~ 11. 12	비합속
	시 공	1	7. 21 ~ 7. 24	합 속
		2	11. 23 ~ 11. 26	비합속

- ① 교육훈련일정은 협회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- ② 매교육당 150명으로 선착순 제한함
- ③ 교육장소
 - 합속교육 : 롯데그룹 중앙연수원(경기도 오산)
 - 비합속교육 : 협회 교육시설 사용

2. 교육훈련 대상

● 의무교육 대상

- ① 설계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-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·한국전기안전공사·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- ③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- ④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- ⑤ 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

● 임의교육 대상

- ①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전력기술인
- ② 관련분야에 해당 또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기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 및 기타 기술자

● 제외 대상

- ①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
- ②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 채용되어 공사업 면허기준에 등록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
- ③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·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·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·부산교통공단·일반 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

3.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목 및 배정시간

가. 안전관리분야 기술자 과정

교 육 과 목	기술등급별 배정시간		
	특 급	고·중급	초 급
전력기술인의 역할과 직업의식	1	1	1
전력기술관련법령 해설	3	3	3
전력설비기술기준 해설	3	4	4
전력시설물의 계통보호	3	3	4
수·변전설비의 안전관리 및 합리적 운용	4	5	6
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	-	3	3
전기안전사고 방지대책	-	2	3
소양교육(비합속은 제외)	-	-	2
체력단련(비합속은 제외)	-	-	2
개강식 및 수료식	1	1	1
총 교육시간	15	22	29

- ※ ① 비합속 교육훈련은 소양교육과 체력단련교육 시간을 제외함
- ②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은 협회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시공분야 기술자 과정

교 육 과 목	기술등급별 배정시간		
	특 급	고·중급	초 급
전력기술인의 역할과 직업의식	1	1	1
전력기술관련법령 해설	2	2	3
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업무	3	3	3
전력시설물의 시공기법	5	7	9
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검토 및 적산	3	3	4
전력설비 기술기준 해설	-	3	4
소양교육(비합속은 제외)	-	2	2
체력단련(비합속은 제외)	-	-	2
개강식 및 수료식	1	1	1
총 교육시간	15	22	29

- ※ ① 전력시설물시공기법의 세부교육과목은 수변전·구내배전·접지·지중 및 가공설비에 대한 시공기법임
- ②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은 협회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- ③ 비합속교육훈련은 소양교육과 체력단련 교육시간을 제외함

다. 설계분야 기술자 과정

교 육 과 목	기술등급별 배정시간		
	특 급	고·중급	초 급
전력기술인의 역할과 직업의식	1	1	1
전력기술관련법령 해설	2	2	3
전력설비 기술기준 해설	-	3	4
전력시설물 설계기법	9	9	12
제어 및 통신설비의 설계기법	2	2	2
방제설비의 설계기법	-	2	2
소양교육(비합속은 제외)	-	2	2
체력단련(비합속은 제외)	-	-	2
개강식 및 수료식	1	1	1
총 교육시간	15	22	29

- ※ ① 설계분야 기술자 과정중 전력시설물 설계기법의 세부교육 과목은 수변전·구내배전·접지·지중 및 가공설비에 대한 설계기법임
- ②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은 협회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- ③ 비합속교육훈련은 소양교육과 체력단련 교육시간을 제외함

4. 교육훈련비

교육훈련대상	시 간	교육비(원)	
		합 속	비합속
특급기술자	14시간 이상	120,000	-
고·중급기술자	21시간 이상	180,000	110,000
초급기술자	28시간 이상	220,000	140,000

※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-446호('96. 12. 28)

5. 교육미필자에 대한 조치

-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(전력기술인·감리원)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자 및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의한 처우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(법 제30조 제1항).

6. 기타

- 본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전기기사 1·2급, 전기공사기사 1·2급, 전기공사기능사 1·2급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기술자격수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